

특별공급 공통 안내문

※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특별공급의 경우 소형·저가주택 소유 시 유주택자임.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 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기관추천 / 경제자유구역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일반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절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없이 예치금 잔액은 청약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인천광역시 (또는 기타 광역시)</th> <th>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th> <th>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인천광역시 (또는 기타 광역시)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 분	인천광역시 (또는 기타 광역시)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문

※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방법	장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자	2020.06.03 (수)	인터넷 청약 08: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청약홈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0.06.10.(수)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0.06.11. (목) ~ 2020.06.15.(월) [5일간] (10:00~17: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T:1833-334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01 (송도동 37-2) ※ 당사홈페이지(www.더샵송도센터니얼.kr)에서 선착순 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예약가능 일정은 당첨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0.06.22.(월)~2020.06.26.(금) [5일간] (10:00~17: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T:1833-334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01 (송도동 37-2)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 분	내 용
대상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5.21.(목)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태어나 입양아를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 상 청약 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 자녀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임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됨.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 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 미분양 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라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성년 자녀수(태어나 입양아 포함)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인천광역시 우선공급 물량에서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신청미달이 발생 되는 잔여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른.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75A	84A	84B	84C	84D	98A	98B	합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거주자(50%)	2	6	4	2	1	2	1	18
	서울시, 경기도 거주자(50%)	1	6	3	1	-	2	-	13
합 계		3	12	7	3	1	4	1	31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거주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거주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계	100			

유의사항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거주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